

미국판례 3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직접 체험한 것처럼 허위보도 한 것은 위법

Kilian v. Doubleday & Co., Inc.,

367 Pa.117, 79 A. 20 657(미 펜실베이니아주대법원 판결, 1951)

사건개요

울프박사는 제 1 차 세계대전의 퇴역 군인들을 상대로 지도하는 한 영어교양강좌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글로 쓰게 하였다. 수강생 중의 한 사람이었던 오코너는 가급적 현장감있고 생생하게 쓰라는 울프박사의 권유에 따라 리치필드 수용소에서 지휘관이었던 킬리안 대령(원고)이 재소자들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당하고 보았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얘기를 남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킬리안 대령은 과실로 오코너의 글에서 서술된 바와는 다른 일부의 가혹행위를 목인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오코너의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어쨌든 울프박사는 위 글들을 더블데이출판사(피고)와 계약하여 출판하였는데, 킬리안 대령이 출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심에서 피고는 위 글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의 정확하고 진실한 기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당행위의 항변을 하였는데 1 심 법원은 위 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한가의 문제를 배심원들로 하여금 판단케 한 결과 이를 긍정하고 따라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리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하였다

판결이유의 요지

1.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어느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한 경우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이 범법행위의 성질은 비슷하더라도 발표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증언은 발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당성의 항변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항변을 배척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증언을 토대로 발표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한가 여부의 문제를 배심원들로 하여금 판단케 하는 것은 위법이다

2. 단지 남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한 내용을 직접 겪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위이다.

판결이유 전문

호레이스 스톤 대법원 판사 집필

이 사건 명예훼손소송에 관하여 배심원들은 피고승소의 평결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리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상고하고 있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되는 글이 작성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는 돈 M. 울프가 지도하는 영어강좌가 있었는데, 그 수강생들은 제 2 차 세계대전에서 다친 군인들이었다. 그 강좌의 일부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쟁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에 관한 수필이나 이야기를 쓰게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의 글을 울프 박사에게 제출하면 그가 교정 내지는 수정을 제안하곤 하였다. 울프 박사는 이 이야기들을 책자로 발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출판사에 의해 원판을 발간한 후, 피고인 더블데이회사와 이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전부 53 명의 수강생들은 적어도 한편 이상 씩의 글을 썼다. 그 책은 「자주 및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겉 표지에는 「저자들의 생생한 경험들의 단편」 들로서 「절대적 정직의 라고만 웅변이라고 선전하였다. 미국 전역에 약 9,000 부 정도가 판매되었다. 게재된 글 중에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죠셉 M. 오코너의 것도 있었다.

오코너는 노르만디 공격 때 중상을 입고 1944 년 8 월부터 10 월까지 대규모의 병력보충대가 있는 영국 리치필드에서 12 마일 떨어진 상설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군인이었다 그가 쓴 원래의 원고에는 리치필드 수용소에서 일어났다고 말해지는 사건들이 서술되어 있었는데,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는 그 일들을 목격하였다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원고를 받은 바 있는 울프 박사는 「그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으나, 오코너에게 그 얘기가 읽힐 만한 현장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자세한 묘사를 하여 더 생생하게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원고를 두 번이나 반환하였었다고 진술했다. 그 결과는 오코너가 원래는 그 글을 3 인칭의 입장에서 썼던 것에 반하여 이번에는 1 인칭의 입장에서 그 사건들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한 것처럼 쓰고 만 것이었다.

결국 「자주빛 언약」에 출판된 대로의 이야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앰블런스에 실려 옮겨지고 있던 나(오코너)와 내 친구는 리치필드 부근의 큰 육군수용소에 도착하였다 그 수용소는 황량하고 추해보였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프랑스에서 보았던 썩고 더러운 독일의 감옥을 연상케 했다. 우리가 앰블런스에 실려있을 때 밖에서 소리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다. '이 쌍놈의 새끼들, 내가 이중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찾아내면 네 놈들은 채찍 20 대를 맞을 줄 알아' 네 명이 들어와 우리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들은 모두 대문자 P 자가 새겨진 푸른 바지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전과 같은 큰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들-죄수(prisoner)-에게 말을 걸면 안돼' 크고 무시무시한 상사가 네게 다가와 말했다' 그 새끼들은 모두 겁쟁이들이야. 그 놈들은 너무 겁이 많아 전투에 돌아갈 수 없어. 그러나 이 감옥 생활을 마칠 때에는 기뻐서 돌아 갈거야' 상사는 그들에게 우리를 병원 안으로 옮기라고 명령 했다.

그들이 나를 침대에 눕히는 동안 나는 그들 중의 한명이 오른손의 다섯 손가락 전부와 왼손의 세 손가락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군데에서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고위층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는 것이었고, 고위층은 미국 시민들을 병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방 주위에서 절뚝거리는 간수보조가 들어와 말했다. 탱크가 폭발되는 바람에 내 몸이 공중으로 치솟았지요. 내 오른쪽 다리근육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와 같이 전투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어느 날 노인네 (대령)가 우리에게 10 마일을 등산하도록 명령했다. 약 2 마일 쯤 갔을 때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들은 나에게 계속 가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나는 그 늙은 독재자 앞으로 불려갔다. 그는 나를 간이군법재판을 받게 했다 나는 6 개월의 중노동형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는 내가 중노동에 부적합 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병원으로 배치되었다. 나는 아직도 죄수이다. 며칠 전 밤에 나는 부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 경비원에게 붙잡혀서 채찍 50 대를 맞았다. ...아침에는 늙은 대령 자신이 병원을 조사해보러 왔다. 그는 크지 않았고 체격이 땅딸막했다. 안경 뒤의 눈은 야비해 보였다. 그는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는 많은 장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어느 누구도 내게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레드(내 친구)와 나를 한번 험악하게 찌려 본 다음 떠났다. 우리가 병동의 복도를 따라 끌려 가고 있을 때 거구의 상사는 다른 장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한 미군병사를 곤봉으로 패고 있었다. 나는 오직 이 감옥을 운영한 저 거구의 상사와 나머지 사람들을 언젠가 만나게 되기를 바랐다 그들에게는 사형의자도 차라리 좋은

편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대령과 책임 있는 나머지 장교들은 고위층에 의하여 보호될 것이다. 내 말을 잘 새겨들라. 대령과 그의 깡패들은 벼락을 맞을 것이다. 그것이 리치필드의 정의이다。」

「대령」, 「늑은 독재자」와 「늑은 대령」 등이 리치필드 수용소의 지휘관이 있던 이 사건 원고 킬리안 대령을 가리켰다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다. 출판된 위 글의 끝부분에는 울프 박사 자신이 첨가한 각주가 달려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46년 8월 29일 연합통신은 제임스 A. 킬리안 대령이 미국군인에 대한 잔인하고도 이례적인 징벌을 허용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군법회의의 재판으로 500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편집자」 이 삽입부분의 의도는 명백히 위 글에서 킬리안 대령에 관해서 말한 것이 그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확실하게 밝혀졌고 또한 저자가 예언했던 바와 같이 그가 「벼락을 맞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에 대한 1946년의 군법회의 재판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그는 그가 지휘관으로 있던 수용소에 구속되어 있던 죄수들에 대한 잔인하고 이례적인 징벌의 부과를 위임하고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에 열거되어 있었다. 두 번째의 혐의는 그가 그러한 징벌을 고의적으로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첫번째 혐의-위임 및 방조-에 관하여 그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두 번째 혐의-고의적허용-에 관하여는 <고의적> 허용혐의로는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단순한 묵인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실제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이를 허용해서가 아니라 과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더구나 공소사실 중 <묵인>한 것으로 특정된 징벌 중 많은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삭제하였다.」

피고는 적극적 항변으로서 발표내용은 저자가본 사건의 「정확하고 진실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상 나타난 그러한 항변의 증거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오코너가 수용소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들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는 자신이 리치필드에 있는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그 점에서 그의 글은 전적으로 허위였다 피고는 리치필드에 있었던 3명의 군인을 증인으로 내세웠고 그들은 그들이 받았거나 남들이 받는 것을 본 징벌들에 관하여 증언하였으나 오코너의 글에 서술된 바와 같은 사건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언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러한 증언은 위 출판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 진실의 항변이 이유있게 되기 위해서는 단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진(substantially true)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한 따라서 증언이 글에서 묘사된 사건들과는 단순히 세부에 관하여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라면, 진실의 항변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전적으로 다른 사건들이 동일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입증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A가 X은행에서 50달러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때, A가 Y은행에서

100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증언에 의하여서는 진실의 항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특히 그가 다른 횡령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적인 혐의 내용은 원고의 일반적인 악성을 입증한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리고 비난내용이 A로부터 손목시계 1개를 훔친다는 것과 같이 특정한 범법 행위인 경우에는 A로부터 벽시계 1개 또는 B로부터 손목시계 6개를 훔쳤다는 것과 같이 더 무겁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스키너 대 파워즈판결에서 새비지 대법원장은 원고가 특정한 종류의 범법행위를 하였다는 비난은 원고가 비슷한 성격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범법행위는 혐의 내용과 똑같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수의 혐의 중 어느 한가지만 진실임을 입증하더라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측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오코너의 글에서 주장된 바와 같은 수용소에서의 채찍질, 죄수들에 대한 욕, 손가락 없는 군인에 대한 환자침대 운반의 사역, 중상군인에 대한 10 마일 등반명령 등의 사건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였다. 리치필드에서 직접 보거나 겪었다고 증언한 피고측 증인들도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원고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본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저자 자신도 그의 이야기를 쓸 당시까지도 원고를 보거나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음을 자인하고 있다. 재판에 현출된 증언 중 저자가 그가 서술한 사건들을 보았거나, 그러한 사건들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건들이라도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원고가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그러한 일들을 용인하였다거나, 그가 「독재자」였거나 또는 그의 모습이 남의 괴로움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같이 생겼다는 것의 어느 하나라도 입증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1심 법원이 실제로 한 바와 같이 그 발표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한가 여부의 문제를 배심원들로 하여금 결정케 한 것은 잘못이다.

원고의 대리인은 출판내용이 저자가 관찰한 바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한 기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피고의 정당성의 항변을 지지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저자가 보았다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출판된 글에서 서술된 구체적 사건들의 진실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 선언하도록 요구하는 주장을 제출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러한 요구는 마땅히 인용되었어야 한다.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한다